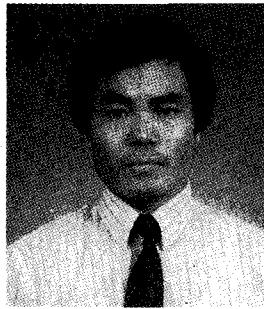


낙농육우산업의 당면한 정책과제



김 인 식
본회 조직지도부장

정 기국회가 열리면서 농민들의 관심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평소 건의하고 주장해 온 사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해결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14대 마지막 국회이고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생문제 우선 해결이 국회의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낙농육우산업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몇몇 부문의 주장들이 아직도 미결로 되어 있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되거나 법적장치를 마련하는 결론을 기대하고 있다. 그나마 국회에서는 농민의 숙원과제 해결이 더이상 지체없이 수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꼭 다행한 일이다. 양축가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낙농육우농가들이 기대하거나 해결의 과제로 삼고 있는 부문을 검토하여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낙농진흥법의 개정

낙농진흥법의 개정 만큼이나 더디고 어렵게 논의되는 법안도 없을 것이다. 두차례의 정부 입법예고를 거치는 논쟁과 국회에서 3년째 찬반양론의 격론속에서 개정을 지연시키는 예는 농업관련 법안중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낙진법은 민자당의 입장이 정리된 상태이다. 지난 9월 14일 정부와 민자당간의 당정회의에서 이미 상정된 개정안에 정부에서 다

시 수정안을 제시한 것을 받아들여 개정키로 합의 하였고, 따라서 국회의 공식 결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당정회의에서 합의하여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금 민자당의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다다는 소식이다. 충남지역 일부 조합장들이 민자당 황명수의원을 방문하였고, 황명수의원은 김종호 정책위 의장을 통해 보류 입장을 표명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전국의 낙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정지역 일부 낙농가들의 반대로 전체 낙농 기들이 피해를 입어야 되느냐의 반론이다. 이젠 낙진법개정이 되는가 하는 찰라에 다시금 찬물을 끼얹는 소식으로 술렁이는 것이다.

낙진법 개정에 대해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만큼 법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내용을 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낙진법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낙진법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반대론자의 견해는 두 가지 문제로 요약된다.

신설되는 낙농진흥회의 문제와 원유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한 문제이다. 낙농진흥회를 축협중앙회 내에 설치할 것과 진흥회의 임원구성을 낙농가위주로 구성하라는 요청이다. 또 낙농진흥회 설립시 낙협, 축협 등 기존 집유조합이 원유 구매권 및 판매권이 박탈되므로 집유조합이 단순한 원유 운송업체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사실 이 문제는 낙진법 개정안이 처음 마련될 당시부터 낙농가들 간에 논란이 되었고 조정되었던 사안이다. 낙농진흥회를 축협중앙회에 둘 경우 유가공업체들은 생산자 위주로 운영될 것에 대비하여 적극 반대해 왔다. 그런데, 원유의 수급 조절 및 가격 결정등에 있어 축협 중앙회가 이해당사자이므로 독립된 상설기구로 하자는는데 이미 합의가 도출된 사안이다. 진흥회의 임원을 낙농가위주로 하자는 주장은 우리 낙농가 모두가 원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만 원유를 사고 파는데는 서로 상대방이 있기 마련이므로 낙농가 대표의 수를 가급적 최대로 하자는 것이 요구사항이고, 이는 다시 하위법에 마련토록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문제는 낙진법 개정을 외면하였을 때, 다시 말하여 현행대로 유지되었을 때의 득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진흥법 개정의 주된 요지는 원유검사의 낙농가 입회로 불신과 분쟁을 없애고 집유선의 개선과 함께 원유잉여시 영세낙농가의 보호가 주된 취지로 보면 될 것이다.

이런 반대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키 위해 이미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 다시 수정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정부의 수정안은 낙농진흥회를 상설기구로 하되 기획업무만 담당하고, 원유의 구매 및 판매계획등 집행업무는 집유조합이 맡도록 하였다. 당초 개정안은 원유의 구매를 진흥회와 농가간, 판매는 진흥회와 유업체간에 직접 계약하며 집행토록 하였으나, 수정안에서는 진흥회가 원유의 구매와 판매를 집유조합을 통하여 농가 또는 유가공업체와의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그리고 진흥회의 임원구성에 있어 중립적 위치로 볼 수 있는 정부, 소비자, 학계 대표 이외에는 생산자와 유업체로 대별되는데, 생산자가 높게 구성되도록 하위법에 추진할 것임을 농림수산부가 밝히고 있다. 또 당초 개정안에는 개별법률 시행일을 공포후 3 월이후로 되어 있던 것을 수정안에서는 공포후 12월 이후로 하여 진흥회의 설립 및 축협에 업무이관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소한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마련토록 하였

다. 이에따라 만약 이번 정기국회에서 낙진법이 개정된다면 내년 3 월경까지는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고, 내년 8월경까지는 진흥회 설립에 따른 준비 작업이 진행된 후 내년 11월경까지 집유관련 업무등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낙진법 개정을 외면하였을 때, 다시 말하여 현행대로 유지되었을 때의 득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진흥법 개정의 주된 요지는 원유검사의 낙농가 입회로 불신과 분쟁을 없애고 집유선의 개선과 함께 원유잉여시 영세낙농가의 보호가 주된 취지로 보면 될 것이다. 물론 부수적인 여려가지 사안이 법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현재보다 개선되거나 변화되는 것이 낙농가와의 관계에 있어 유리하나 불리하나에 촛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우유가 남아들때에도 유업체와 낙농가의 관계가 지금처럼 유지될 것인가 하는 물음의 답변은 낙농가들이 더 잘 이해할 것이다. 특히 영세농가의 낙농규모 확대를 통한 전업화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이며, 과연 국제경쟁력을 발

휘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된다. 물론 개정되는 낙진법안이 낙농의 모든 문제 해결에 답안이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최선의 방안이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축산물 가공업무의 농림수산부 이관

축산물 가공업무는 당초 농림수산부 소관이었다. '85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이래 지금까지 가공과 생산을 일원적으로 관리해야 됨을 강조하면서 계속 건의해 오고 있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으로 가공업무 이관은 청와대 지시에 의해 강행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무처, 보건복지부, 농림수산부, 내무부장관 협조를 받고 대통령재가를 받은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관리제도 개선대책」이 결정되어 농림수산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진 것이다.

업무이관에 따른 타당성 검토나 그 혼란 공청회 한번 없이 이관되었지만 당시 시대상황 때문인지 한국낙농육우협회등 일부의 반대소리만 있었을 뿐 그냥 빼았기고 말았다. 수입개방이 되고 수급문제가 농업의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가공업무의 환원문제가 새삼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농축산물의 가공이 늘어나고 가공산업 발전이 농축산업의 발전과 직결되는 소비형태로 변화되면서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수입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거론되면서 민자당이 미국의 FDA(식품, 의약품 관리청)를 모방한 행정청신설을 가을 정기국회에 추진하게 되면서 가공업무의 농림수산부 환원문제가 농축산업의 숙원과제로 부각되게 되었다.

가공업무는 아직 우리나라 여건에서 축산물이 주가되므로 축산농가의 주된 관심사이다. 낙농육우, 양돈, 양계 등 축산업이 축산물 수급 불균형에 따른 엄청난 파동을 겪는 불황기에도 원료와 가공업무의 이원화에 따라, 1차 산물인 원료취급 업무만 농림수산부가 맡고 가공업무는 보건복지부가 관장함으로써 수급안정을 위한 농림수산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무 일원화의 주된 요지이다.

따라서 축산업계는 그동안 10년 간이나 실질적인 축산시책 마련을 위해 가공업무의 농림수산부 환원을 요구하여 왔고, 이제까지 숙원과제로 되어왔다.

미국의 경우 식품이나 의약에 관련한 업무를 FDA에서 관장하지만 식육이 2~3% 이상 함유된 축산물의 경우는 미농무성(USDA)이 관장한다. 따라서 미국의 FDA를 모방한 행정청을 신설할 때 그동안 잘못 이관되어 농축산업의 수급대책마련이 문제를 안겨주었던 가공업무를 이제는 농림수산부에 환원시켜 제자리를 찾도록 하자는 것은 당연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구체적인 부처간의 업무이원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림수산부는 가축사육에

서 도축단계까지는 관장한다. 가령 가축개량, 중식을 비롯한 축산물의 수급조절이나 가격안정을 비롯하여 원유나 지육의 위생검사, 가축위생과 방역, 도축장의 위생 및 관리, 육류도체 등급제실시등이 그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도축이후 단계부터 가공, 소비단계까지를 관장한다. 즉 도축이후 운반업무와 포장육, 햄, 소세지, 분유제품 그리고 유통업체와 정육점의 지도감독과 위생기준제정 및 검사등을 관장한다.

그러나 유통단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업무처리와 책임은 농림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다. 축산물의 가공산업육성 및 유통개선시책은 농림수산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즉 축산물생산, 가공, 판매의 계열화 사업지원은 농림수산부 고유사업이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유가공시설지원, 식물유통센타지원 및 식육처리기술교육 역시 농림수산부가 맡은 사업이다. 이에 비해 보건복지부는 축산물가공공장에 대한 위생허가와 기준제정 및 관리등을 맡음으로서 업무소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축산물 검사에 있어서도 이원화되어 있다. 원유나 지육등 원료 축산물에 대한 검사와 수입축산물 지육, 정육, 내장과 원유의 검사는 농림수산부 관장이다. 그러나 국내산 및 수입 축산물의 검사방법과 기준제정, 캔류와 가공품에 대한 검사권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 소비단계에 있어서도 실질대책은 농림수산부가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이원화 되어 있다. 가

“

낙농의 경우 선진낙농 모두가 원유수집에서부터 제품생산까지 일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낙농의 발전을 가능케 하고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도축단계와 판매가격 지도단속, 도체등급제 이행여부는 농림수산부 소관이고 운반, 가공, 판매 업무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이제 본격적인 냉장육수입유통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양축농민을 담당한 농림수산부가 일원적으로 관리하지 않고는 국내 대응책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

령 한우 전문판매점 설치, 학교우 유급식지원, 육류 유통종사자 위생 교육, 소비자에 대한 홍보 활동사업은 농림수산부가 관장하면서도 정육점의 모임체인 축산기업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다. 또 정육점(식육판매업소)의 영업허가 역시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로 이원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축산물의 품목별 업무소관 역시 이원화되어 있다.

우유중에서도 원유단계는 농림수산부 소관이고, 분유와 치즈를 비롯한 가공품의 관장과 유가공업체 허가 및 관리, 감독권은 보건복지부 관장이다. 낙농의 경우 선진낙농 모두가 원유수집에서부터 제품생산까지 일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낙농의 발전을 가능케 하고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도축단계와 판매가격 지도단속, 도체등급제 이행여부는 농림수산부 소관이고, 운반-가공-판매 업무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이제 본격적인 냉장육수입유통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양축농민을 담당한 농림수산부가 일원적으로 관리하지 않

고는 국내 대응책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양계를 비롯한 계열화 사업 역시 업무는 이원화되어 있다. 계열화사업의 생산, 도축, 가공, 판매, 경영 및 기술사업 일체를 농림수산부가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계열화사업 중 포장육, 햄, 소세지 등 가공판매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한마디로 축산업에 있어 생산, 가공, 유통단계에 까지 일원적으로 관장해야 하는 특수성이 무시된채 이원화 되어 있어 발전대책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보건복지부소관이 식품업무의 위생적관리를 우선으로 제시하지만 축산물의 위생관리에는 수의사들이 관장하고 있어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약하다.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관장함으로써 양축농가나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혼란을 느끼는 일마저 생겨나고 있어 문제이다.

그 비근한 예로 올 1월 소의 골을 먹은 사람이 탄저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무근의 오보를 보건복지부가 퍼뜨려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

는 등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처사가 양축농민들을 분노케 한 적이 있다. 다행히 수의과학연구소에서 반박하여 사실무근의 판명이 나오지 않았던들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사례이다.

또 지난해 12월 호주에서 수입된 쇠고기가 농약잔류물질이 있다는 통보를 호주정부로부터 통보 받았다는 TV 뉴스를 지켜 본 국민들로서는 우리 검역 당국의 무능에 통탄해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쇠고기 검사는 동물검역소에서 담당하지만 실질적인 검사항목이나 기준, 시험방법의 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 농림수산부 소속인 동물검역소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동물검역소에서 외국의 시험방법을 긴급 도입하여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국민보건을 위한 차원의 업무이원화 명분이 무색케 되었다.

물론 외국의 예 역시 축산물의 경우 업무소관이 농민담당행정 부처이다. 미국, 캐나다, 유럽 모두가 농림수산부가 관장하고 있다.

배합사료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부가세영세율적용 문제만큼이나 직접 양축농가의 피부에 와 닿는 사안도 드물 것이다. 그런만큼, 양축가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장기간에 걸쳐 견의하였지만 해결 또한 되지않는 사안역시 드물 것으로 본다.

지난 6·27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민자당과 정부와의 당정

회의에서 부업농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여 10월부터 부업농만 적용받게 되어 시행과정에서 많은 파장이 우려된다.

지난해 연말과 올 7월 두차례에 걸쳐 배합사료가격은 인상되면서도 양축가의 간절한 숙원과제이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영세율 적용 실천은 반응이 없다가 느닷없이 부업농에만 적용한다는 소식에 농가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부업농에만 적용하는 배경은 아마 여론을 의식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택시에 대한 부가세영세율 적용이 논의되면서 양축가의 숙원과제를 외면할 수 없고, 재경원의 세수입 감소에 따른 반발등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료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영세율 적용대상자인 전업농을 제외시켜 영세율 적용의 취지를 왜곡시켰다는 항의도 있고, 정부의 개방화 대응시책이 전업농 육성이면서도 전업농을 제외시켰다는 원망의 소리가 제대로 정치권에 전달되기를 기대해 본다.

축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영세농 가중에서도 규모확인 신청조차 어려운 농가들의 구성도가 엄청나 양축농가의 96%가 부업농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가령 한우의 경우 1~4두 사육규모 농가수는 총 53만호 중 28만호(53%)에 이르고, 양돈 1~4두 규모 농가수는 총 5만호 중 2만2천호(44%), 양계 1~

19수 규모 농가수는 총 18만호 중 16만4천호(91.1%)에 이른다. 이들 농가들이 사실상 부업규모 확인 절차를 거쳐 배합사료영세율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그야말로 영세농가이다.

19수 규모 농가수는 총 18만호 중 16만4천호(91.1%)에 이른다. 이들 농가들이 사실상 부업규모 확인 절차를 거쳐 배합사료영세율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그야말로 영세농가이다.

설령, 부업농가 전부가 신청하여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가축사육두수 기준시 혜택은 미미하다. 가령 낙농부업규모인 젖소 19두이하가 총 55만두 중 14만4천두로 26.2%이고 양돈 200두미만이 총 5백85만3천두 중 1백8만두인 17.2%, 양계 1만수 미만이 총 7천8백만수 중 1천2백만수로 16.3%에 불과하다.

아마도 부업농여부의 기축사육 두수 확인 과정에서 농가와 일선 행정 담당자와의 끊임없는 시비가 일게 될 것이고 정부에 대한 원성이 높아질 것이 틀림없다.

정치적으로는 집권 민자당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 틀림없다. 대통령선거공약사항에 대한 기대상 실을 넘어서 불신을 초래하였고, 농정공약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도 연결지어진다고 본다. 특히 42조

원의 농발기금으로 농촌지원시책을 정부는 연일 강조하지만 부가세 영세율조차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서 그 투자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농특세 15조원 신설을 홍보하기에 앞서 양축농가의 십년 숙원과 제인 부가세영세율 적용을 먼저 실행하라는 소리조차 터져나오고 있다. 이미 UR 비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는 7대 농정과제를 제시하였고 농민의 지출부담을 줄인다는 것이 그 하나의 과제로 되어있는 만큼 이 문제는 더이상 지체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농민의 부담완화에 여야가 따로없는 만큼 축산농가의 실질 부담해소 방안으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전면 실시되어야 한다.

냉장육 수입유통의 대응책 마련

한미통상 협안과제이던 쇠고기 냉장육 유통문제가 미국의 요구대로 타결되었다. 쇠고기는 90일, 돼지고기는 45일을 내년 6월까지 적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유통기한이 자율화된다. 자율화라는 용

연장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는 국내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 더이상 지연시킨다면 때가 늦을 수 밖에 없다. 단지 소값이 안정되어 양축농가의 감자이 무디어져 있다는 것이 육우사업의 안정이라는 반응으로 안일하게 넘긴다면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우선 국내 쇠고기와 수입육, 그리고 한우육, 젖소육의 구분이라도 분명해야 한다. 수입육과 국내산이 구별되지 않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우의 우수성을 과시하자면 한우와 젖소육과도 구분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농림수산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본다. 한우전문매장도 모든 한우 판매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젖소전문매장 설치를 낙협부터라도 시도해야 한다. 한우도 살고 낙농가도 살고, 소비자의 피해도 줄이는 대책이다.

그리고 한우가 살기위한 근본대책은 지역별 한우조합을 조속히 결성토록 해야 한다. 한우농가들이 단합하여 협동조합을 통해 생산, 유통, 판매를 담당하고 자자체에서 도운다면 지역별 한우는 지켜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자면 현재의 한우조합 결성요건으로는 불가능하다. 20두 이상규모로는 전체 한우농가의 34% 정도만 가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우농가의 조합 가입요건의 제한을 없애야 한다.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해결하지 않고 수입 냉장육의 유통만 우려해서는 이제 때가 늦게 될 것이다.

한우가 살기위한 근본대책은 지역별 한우조합을 조속히 결성토록 해야 한다. 한우농가들이 단합하여 협동조합을 통해 생산, 유통, 판매를 담당하고 자자체에서 도운다면 지역별 한우는 지켜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자면 현재의 한우조합 결성요건으로는 불가능하다. 20두 이상규모로는 전체 한우농가의 34% 정도만 가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우농가의 조합 가입요건의 제한을 없애야 한다.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해결하지 않고 수입 냉장육의 유통만 우려해서는 이제 때가 늦게 될 것이다.

어가 개방시대에 일면 타당성이 있는 듯 하면서도 참으로 위험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첫째, 국내에는 냉장육 유통시설 체계가 없다.

그동안 정육점에서 시판되는 소꼬리는 거의가 냉동상태였다. 냉장육이든, 냉동육이든 우리 소비자들이 구별의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루어진 유통관행이었다. 더욱이 전국 4만5천여개의 영세정육점에 냉장유통시설을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다. 이점을 간파한 미국에서 한국의 한우를 제압하기 위한 술책으로서 냉장육 수입을 추진하게 하기에 이르렀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통기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현재 국내 쇠고기는 14일로 되어 있으나, 미국의 냉장육을 국내에 충분히 유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연장 압력을 구사하였고, 진공포장해 들여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계산하여 90일로 받아낸 것이다.

둘째, 내년부터 자율화 되었을 때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통기한이 설정되는 가운데서도

식품 유통기한을 연일 속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소비자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이제 유통기한 마저 업계자율에 맡겼을 때 과연 상도덕을 신뢰할 수 있을지가 문제이다. 미국의 냉장육이 진공포장되어 자율화조치로 유통되는데 비해 검사하거나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지 의문이다.

셋째로, 국내 냉장육 유통의 대비책이 전혀 없다.

냉장육과 냉동육의 차이를 먹어본 사람은 알 수 있게 마련이고 따라서 냉장육 위주 공급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토록 해야 하는데 미국 쇠고기는 국내에 와서 판을치는 터에 국내 한우나 쇠고기 공급 대응책은 전혀 없다는 것은 국내 육우산업의 위기이다. 그래서 지금 까지 국내 준비기간을 마련할때까지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여 유통 자율화시기를 늦추어달라는 것이 있으나 외면당하고 말았다.

특히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냉장육 유통기한이 62~72일까지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데도 미국 요구대로 90일까지